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10203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성
담당변호사 박정혁
피 고 1. 시흥시
2. B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피고들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시흥시는 시흥시 C 소재 시흥D 공공주택지구 내 연출분수를 폐기, 철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경시설물 제작, 분수기자재 생산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시흥시 C 저수지에 연출분수를 설치한 자이다. 피고 시흥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분수 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연출분수의 시공

원고는 E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로부터 수주받은 「시흥D 공공주택지구 F호수공원 조경공사」 중 조명 연출만 가능한 분수를 시공하는 연출분수공사(이하 '연출분수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9. 5. 29.경 LH와 연출분수공사에 원고가 보유한 '분수대 전력 제어장치'(특허 G)에 관한 특허 등을 활용하기로 하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20. 8. 18.경 위 연출분수공사에 착수하여 연출 분수(이하 '이 사건 연출분수'라 한다) 시공을 마쳤다.

다.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피고 시흥시의 자료 제공 요청

피고 시흥시는 음향장비가 갖춰진 음악분수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음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2021. 10. 29.경부터 2022. 8.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출분수 및 새로 설치하게 될 음악분수에 관한 자료(① 시흥 D 날개 연출 영상, ② 시흥 D 기본 연출 영상, ③ 시흥 D 확장판 연출 영상, ④ 시흥 D 부력분수 추가 설비공사 참고도면, ⑤ 시흥 D 부력분수 추가공사 개략공사비, ⑥ 시흥 D 호수공원 분수-기본 확장형 야경, ⑦ 시흥 D 호수공원 분수-기본 확장형 주경, ⑧ 타 현장 영상 미디어연출 샘플 자료, ⑨ D호수공원 수경시설 제안서, ⑩ D호수공원 수경시설 도면 내역, ⑪ 시흥 확장판 연출 영상-H 로고, ⑫ 2021. 10. 29.자 발송 이메일로 보낸 각 이미지, 이하 통칭하여 '원고 주장 영업비밀'이라 하고, 각 자료는 "원고 주장 영업비밀 ○항"이라 한다)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그중 일부를 제공받았다.

라. 음악분수 조성사업에 관한 입찰 진행

피고 시흥시는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여 2023. 2. 23. 피고 시흥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사업금액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천지방조달청 공고 I 'D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음악분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피고 시흥시는 2023. 3. 16. 피고 B를 비롯한 입찰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입찰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230309 연출분수상세도.zip" 파일을 송부하였다.

피고 시흥시는 2023. 4. 19. 피고 B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2023. 5. 10. 인천지방조달청과 피고 B은 이 사건 음악분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음악분수의 설치

피고 B은 이 사건 연출분수의 주변을 둘러싸고 음악분수대(이하 '이 사건 음악분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연출분수는 중앙의 꽃 모양 조형물



은 그대로 있으나 날개 부분이 접힌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호증, 제18 내지 25, 4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피고 시흥시에게 제공한 원고 주장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 시흥시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및 영상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입찰 공고를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 피고 B를 비롯한 입찰 참가자들에게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 사건 연출분수의 철거·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연출분수에 대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날개 확장 연출 구조에 수정·증감을 가함으로써 동일성을 훼손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연출분수를 철거 및 폐기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7, 34 내지 37,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시흥시는 시흥 D지구 총연합회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악분수 설치에 관한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연출분수 및 음악분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원고 소속 J은 2021. 10. 29. 10:50경 피고 시흥시 소속 K에게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⑤ 내지 ⑦, ⑨ 내지 ⑪항 기재 문서 및 영상이 첨부된 이메일을, 2021. 11. 4.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④, ⑤항 기재 문서 및 영상이 첨부된 이메일을 각 전송하였다. 원고의 2021. 10. 29.자 이메일 본문에는 "파일 외부 반출 보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 시흥시는 2023. 3. 16. 피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입찰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음악분수 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230309 연출분수상세도.zip" 파일을 송부하였다. 위 "230309 연출분수상세도.zip" 파일에는 원고가 피고 시흥시에게 제공한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⑩항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시흥시가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공고하며 게시한 과업지시서(갑 제 14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시흥시에 제공한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주장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 게시한 과업지시서에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④항의 정보를 이용하였고, 피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입찰 참가자들에게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⑩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시흥시가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④, ⑩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주장 영업비밀 중 ① 내지 ③, ⑤ 내지 ⑨, ⑪, ⑫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 ⑩항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 ⑩항 정보가 비밀로 관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 ⑩항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연출분수를 시공하면서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 ⑩항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 이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객관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회사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 시흥시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위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거나, 위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주장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시흥시가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지목된 원고 주장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 및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시흥시 사이에 위 자료에 관하



여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약정이나 계약 조항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 시흥시에게 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차례 언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음악분수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피고 시흥시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 주장 영업비밀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바, 피고 시흥시에게 단순히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 영업비밀을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 주장 영업비밀 ④, ⑩항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연출분수를 시공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E 주식회사와 연출분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원고의 특허공법에 관한 사용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위 정보에 접근한 자들에게 이 사건 연출분수의 시공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원고 주장 영업비밀을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



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39, 43, 4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출분수는 그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연출분수 중 중앙의 D 꽃 모양의 조형물의 외형 및 형상 자체는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별도의 물리적 개변이 가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날개부분이 접힌 상태로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연출분수의 주변에 이 사건 음악분수의 조형물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연출분수 중 날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내용 및 형식을 저작물의 원형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연출분수는 그 소유자가 분수의 날개 부분을 접어 두거나 펼치는 방법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피고 시흥시가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날개 부분을 접어 두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연출하고자 한 정상적인 전시 형태 및 이용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연출분수 둘레에 설치된 음악분수 구조물을 철거하면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날개 부분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연출분수에 수정,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이 사건 연출분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수의 좌우 날개부분은 수납되어 있다가 분수를 확장하여 연출하고자 할 때 날개부분을 펼쳐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출분수에 관한 제안서(갑 제39호증)에서 D호수공원의 이름인 D 꽃을 모티브로 반고정 부력식 분수대를 설계하였고, 분수 가동이 어려운 시기에도 조명장치를 통한 연출만으로 D호수의 상징물로서 기능하도록 D 꽃잎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는 날개 부분이 확장되지 않은 중앙 꽃 모양의 분수대 조형물에 대하여만 디자인 출원을 마쳤다(갑 제9호증, 출원번호 L).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연출분수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이 사건 연출분수의 중앙에 위치한 D 꽃의 모양을 형상화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출분수의 위 부분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안요청서(갑 제43호증)에 제약사항으로 기존 부유식 분수대의 외관 디자인 조형물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음악분수대로 연계 및 연출이 가능한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분수대와 연계할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 피고 시흥시로서도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내용, 형식 등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 사건 음악분수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입찰참가업체들에게도 주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연출분수의 날개가 확장·개폐되는 가변적 구조와 그에 따른 연출 효과가 이 사건 연출분수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출분수에 관한 창작적 표현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이 사건 연출분수의 중앙 D 꽃 모양의 조형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연출분수 날개 부분의 가변적 구조가 저작물의 표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연출분수의 조명과 날개부분의 미



작동으로 인하여 하자가 여러 차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날개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연출분수에 관한 철거 및 폐기를 구하는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판사 김선호